

의안번호	2213695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12.10.
추계번호	25C570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말함 － (개정)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13조의2 (보건지소의 통합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로 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3조의2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¹⁾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²⁾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안 제13조의2제1항),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안 제13조의2제2항) 규정함

- 개정안은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보건진료소와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³⁾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더라도, 동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따르므로 개정안에 따른 운영비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보건진료소는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동일한 인력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인력 교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인력 변경이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또한, 안 제13조의2제1항은 여러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10조⁴⁾에 따라 이미 22개의 통합보건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법률 조항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함

2)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진료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5)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전제 요건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4) 제10조(보건진료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것으로 판단됨

[표 1] 2024년 말 기준 통합 보건지소 현황

연번	보건기관명	시도	시군구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남부통합보건지소
3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미사보건센터
4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남부통합보건지소
5	경기도	광주시	퇴촌남중통합보건지소
6	경기도	양주시	은남통합보건지소
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
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통합보건지소
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10	충청북도	보은군	동부통합보건지소
11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보건지소
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보건지소
1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통합보건지소
15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
16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통합보건지소
17	전라남도	장흥군	북부통합보건지소
18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은풍면통합보건지소
19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보건지소
20	경상남도	고성군	영천통합보건지소
21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보건지소
22	경상남도	산청군	덕산통합보건지소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지 않거나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할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추가 고용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이는 최근 공중보건 의사가 감소하면서 공중보건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추가 고용 여부와 그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
 - － 첫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면허를 획득한 공중보건 의사 인력의 대체 가능 여부, 대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둘째,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인 체계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도 담당 인력 부족으로 순회진료를 하는 등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으므로⁵⁾ 신규 기관에 대한 추가 채용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5) 또한 보건진료직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역량 하락, 약제 처방의 한계가 지적된 바 있고, 의료취약지의 일차보건의료 제공자이자 정신건강 상담가 등 보건진료소 역할 변화의 과도기를 겪고 있음(한진옥,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국회입법조사처, 2025.11.)